

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10. 19.(금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55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, 제56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6 의결사항

가.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- (주)케이티의 티온텔레콤(주) 주식소유
- (2012-57-230)

o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8조에 의거, (주)케이티의 티온텔레콤(주) 주식소유 인가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

- (주)케이티의 티온텔레콤(주) 주식소유(지분율 100%) 인가 건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함

< 인가조건 >

◆ (주)케이티와 티온텔레콤(주)은 인가신청서(보정자료 포함)에 기재된 티온텔레콤(주)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주식취득법인 : (주)케이티(대표 이석채)

- 피주식취득법인 : 티온텔레콤(주)(대표 나기대)

주요사업 (이용자 수, '12.7월)	사업 권역	주요주주 변동	경영현황('11년)		
	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주파수공용통신 (6,386명)	서울, 인천, 경기, 충청	KT 0% → 100% · 군인공제회C&C 25.2% → 0% · 하늘문(주) 20.5% → 0% · 삼성SNS(주) 20.3% → 0% · (주)선진 5.0% → 0%	14 억원	24 억원	- 33 억원

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57-231)

o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정보통신사업 관련 기업 환경 개선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

< 기업환경 개선 >

-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·감리를 정보통신기술사 등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

- 공사업 등록이 금지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허용

-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(영업정지) 유예

< 시장의 건전성 확보 >

- 공사의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,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
-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시·군·구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 부여
- 공사업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관 지정 근거 마련

o 개정안 대비 수정안(자체 규제심사, 법제처 사전심사에서 개선 권고)

- 공사업 등록의 「원칙 허용」에 따라,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사실 증명 확인서 제출”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(안)에 상향 규정
-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은 시행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자체 규제심사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

o 향후일정

- '12. 10월 ~ 11월 :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
- '12. 11월 ~ 12월 : 차관·국무회의 의결 (국회제출)

다. 위헌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처분 처리에 관한 건 - (주)엘르티브이코리아 (2012-57-232)

- o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시청자에 대한 사과' 관련 위헌 판결에 따라 (주)엘르티브이코리아의 '스타일 TIP 엘르차트' 프로그램에 대해 기 처분한 '시청자 사과' 제재조치를 취소하기로 의결함

7] 보고사항

가. 디지털방송 난시청/수신환경 개선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

- o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난시청 가구가 TV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간의 난시청/수신환경 개선실적과 향후 계획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 내용(디지털방송 난시청/수신환경 개선실적)

① 디지털TV 방송보조국 확대 구축

-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을 통해 '12.6월까지 기존 아날로그TV 방송보조국 (1,125국)을 일대일 방식으로 디지털로 전환 완료
- 또한, 디지털 방송보조국 88개국을 추가 구축하였고, 연내 33개국을 더 구축하여 기존 아날로그 수준 이상의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보

②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 추진

- (난시청지역 해소) '10년부터 난시청지역에 소출력 중계기 구축(144개소, 57.6억원), 농어촌 마을공시청 설비의 디지털전환 및 신설(394개소, 33억원)
- (난시청가구 지원) '05년부터 절대난시청가구에 위성수신기 보급(6.6만, 180.4억원), '12년부터 신규난시청가구에 위성수신기 무상 임대(5천, 5억원)

③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

- (공공임대 아파트) 방통위와 LH SH공사 등과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여 '12.6월 까지 전국 804단지 전체 시설의 개보수 완료('07년부터 114억원)
- (민영아파트) 디지털시청100%재단·스카이라이프 공동으로 개선 지원('12년 114.5억원), 아날로그공시청 단지는 지역별 종료일정에 따라 우선 지원 중

④ 관련 제도 정비

- (소출력 중계기) 방송사가 난시청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출력 중계기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('10.12월)
- (공시청설비)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공시청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(부분수리 5년, 전면수리 15년) 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 개정('12.3월)
- 아파트 공시청설비에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('11.3월)
- 공시청설비를 방통위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품질향상 도모('12.3월)

○ 향후 계획

- 방송보조국 추가 구축, 소출력 중계기, 농어촌 마을공시청, 위성수신기 지원 등을 통해 난시청/수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('13년 149.3억원)
- 민방 등의 디지털방송 보조국 추가 구축 및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반 구성 운영('12.10월~)

나.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
- 케이블방송, 위성방송, IP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'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'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(추진과제)

- ①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

-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정비
- 장기적으로는 기술방식에 따른 수직적 규제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추진

②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및 요금상품 보급

-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시중가의 절반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TV를 선정하여 보급 추진
-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이용요금 감면 비율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
- 케이블방송은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방송 시청이 가능한 Clear QAM 전용 상품을 업계 자율로 추진
- 유료방송의 저가시장 고착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추진
-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보급체계, 방송을 활용한 홍보방안,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시 가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'13년 중 실시

③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절차 제도화

-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방송 시청권 보장 및 TV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~5년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/SD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제도화
- 외국 사례 및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'13년 중 지상파 디지털방송 변환 재송신 의무기간을 결정
- 아날로그/SD 유료방송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가 종료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절차 마련
- 디지털/HD 전환 완료 단계 지역사업자는 아날로그/SD 가입자 전환 대책 등 가입자 보호 계획을 승인받고 아날로그/SD 유료방송을 조기에 종료 가능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별도 통지기로 함

6. 폐 회 (11:05)